

머 리 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아직 미비하여 향후 사회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체계가 미흡했던 시기였던 1961년에 도입된 법정퇴직금은 부분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및 실업급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급속한 경제구조 변화, 연봉제 확산과 근속년수 단축 등과 같은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생활자금으로 주로 사용되어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인 수급권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입법예고하고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하며, 또한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도 근로자가 일시금과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현행 조세체계상 법정퇴직금 중 퇴직일시금에는 퇴직소득세제가 적용되어 분리 과세되나 연 60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많은 경우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세액이 연금에 부과되는 세액보다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노후소득이 충실하게 보장되려면 퇴직일시금보다는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현행 소득세제는 연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선진국의 퇴직연금 관련세제를 조사하여 도출한 시사점과 우리나라의 퇴직일시금세제 및 연금소득세제를 Simulation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퇴직급여 관련 소득세제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4년 9월

보 험 개 발 원
원장 김 창 수

요 약

1. 서론

□ 연구목적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중에서 하나 이상을 퇴직급여 제도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가지는 유인(incentive) 중 두 제도에 각각 적용되는 세제체계에 의한 소득세액을 비교한 후에 두 제도에 대한 선호를 보일 것임.
-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현행 퇴직일시금과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그리고 IRA연금의 세액과 적용한계세율을 비교하여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되기 위해 적절한 세제 체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 소득 자료에 기초한 Simulation방법 적용.
 - 소득계층별 그리고 가입연령·기업규모·재직기간별 임금액으로 퇴직 소득과 퇴직연금을 직접 계산하여 비교함.
- 사용한 소득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소득계층별 세제혜택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2003년 통계청 발표 『도시가계조사』 도시근로자가구의 분위별 가구주 근로소득을 사 용함.
- 가입연령·기업규모·재직기간별 세제지원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판정 하기 위해 노동부의 2002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에서 산업 별 통계 중 종업원수 30~99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전산업) 와 종업원수 500인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전산업)의 연령별 임금을 사용함.

2. 퇴직금 및 퇴직연금 관련 현행 세제체계

□ 퇴직금 세제 체계

— 퇴직금세제체계에서 퇴직소득세액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음.

$$\boxed{\text{퇴직 소득}} - \boxed{\text{비과세 퇴직 소득}} = \boxed{\text{퇴직 소득 금액}} - \boxed{\text{퇴직 소득 공제}} = \boxed{\text{퇴직 소득 과세 표준}} \times \boxed{\text{기본 세율}} = \boxed{\text{퇴직 소득 결정 세액}}$$

- 퇴직소득공제에는 퇴직급여비례공제와 근속년수 공제가 있음.
 - 퇴직급여비례공제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근속년수 공제는 근로자가 근속한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을 공제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공제됨.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50만원×(근속연수-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 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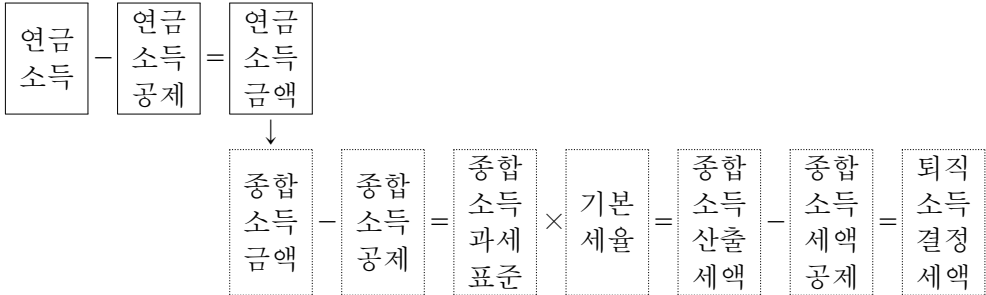
- 퇴직소득공제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이 결정되면,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산출세액 산출 (연분연승법).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초과	1,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퇴직연금소득세제

- 연금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의한 연금 및 퇴직보험에 의한 연금의 합계액.
- 연금소득은 급부액 수령시 원천 징수됨 (10%).

— 연금소득 과세절차는 다음과 같음.



· 연금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총연금액	공제액
250만원이하	총연금액
25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250만원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0만원초과 900만원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00만원초과	430만원 +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주: 공제액은 600만원이 한도

3.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 미국

- 미국의 퇴직연금은 세제적격플랜, 개인퇴직계좌, 準세제적격플랜, 비적격연금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세제적격플랜에는 401(k), 이익분배연금, 종업원저축제도, 주식상여제도, Money Purchase Pension Plan, 종업원 지주 플랜, 확정급여형 연금, Target Benefit Plan, Self-Employed Plans

(Keoghs Plan) 등이 있음.

- 개인퇴직계좌에는 전통적인 IRA, 이관 IRA, 간이종업원연금 (SEP), Simple IRA, Roth IRA 등이 있음.
- 이 외에도 교육용 IRA로서 529 플랜, Coverdell 교육저축계정, College Tuition Deduction, Employer-paid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s,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Hope and Lifetime Learning Credits 등이 있음
- 準세계적격플랜(Almost qualified plans)은 세계적격연금 plan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세계적격연금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연금 플랜으로 457(b) 플랜, 457(f) plan, 403(b) 플랜 등이 있음
- 非적격연금 (Non-qualified Plans)은 세계적격연금플랜을 충족하지 못한 연금 플랜을 말함.

— 미국의 퇴직연금세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연금소득 급부액은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신고하며, 자격이 있는 경우 자본차익과세의 세율을 적용받는 10년 평균법(ten-year averaging)을 사용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음.

- IRA 또는 다른 퇴직연금으로 급부액을 일부 또는 전부 이관할 경우에는 납세시기가 연장됨.
-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의 조기인출 (59.5세 이전 인출)에 대하여 10%의 연방소득세를 벌칙성 조세 (penalty tax)로써 납부해야 함 (예외 있음).
- 연금가입자의 사망으로 연금을 수령한 자는 상속세를 직접 납부해야 함. 이 경우에는 59.5세 이하라도 벌칙성 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다만, 적용세율은 분할수령을 통하여 낮출 수 있음.
- 1993년 퇴직연금 급부액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되어, 연금급부액 수령시 20%를 납부함. 단, 연금 간 직접이관, 세후각출금으

- 로부터 연금수령, 연금급부액을 10년 이상 균등정기금으로 수령, \$200 이하 소액 연금 등에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생계곤란으로 인한 인출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됨. 연령이 59.5세 이하일 경우 10%의 별칙성 조세가 추가로 부과됨. 주의 할 것은 생계곤란으로 인출한 금액은 이관대상이 아니라는 점임.
- 準적격연금 플랜의 세제도 세제적격연금과 거의 유사한 체계임.

□ 영국

- 영국의 퇴직연금은 급여관련방식을 채용한 확정급부제도, Money Purchase Schemes 형태를 취하는 확정기여형, 그리고 급여관련 방식과 Money Purchase Schemes를 조합한 혼합형(hybrid schemes)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됨.
- 영국의 퇴직연금은 제도 개선 시기별로 1970년 이전 체제, 1970년 이후 체제, 1987년 체제, 1989년 체제 등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음.
- 퇴직연금 각출관련 세제는 1989년 체제와 관련된 세제 체계와 1970년 이전의 퇴직연금가입자로 구분되어 적용됨.
- 1989년 체제와 관련된 세제 체계에서는 근로자의 각출금은 소득의 15%까지 전액소득 공제되며 연도별로 상한소득이 있음.
- 1970년 이전의 퇴직연금가입자들의 경우, 사업주 각출금 한도는 없고 근로자의 각출금은 급여의 15%까지 소득공제 대상임.
- 퇴직연금 급부단계의 관련 세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확정급부방식의 경우, 연금급부액은 근로소득 (earned income)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며, 2004-05과세년도의 기본세율은 22%임.

- 과세표준액이 £31,400을 초과하면 40%의 세율이 적용됨.
 - 전환되지 않은 일시금(lump sum)은 추가소득(extra income)으로서 과세대상임.
 - 연금급부의 최고한도액은 20년 근속이상 최종급여의 2/3 (비과세 포함)이며, 비과세 일시금(tax-free lump sum)은 근속년수 40년의 1년에 대하여 최종상한소득의 3/80 또는 최초연금액의 2.25배로 제한됨 (1970년 이후 세제 체계).
 - 1987년 체제의 비과세 일시금 한도액은 £150,000임.
 - 1970년 이전의 퇴직연금가입자는 연금급부액 중 일부를 비과세일시금으로 전환할 수 없음. 또한 급부액은 근속년수별로 차등됨.
- 확정기여형에 대한 세제체계는 확정급여형과 동일하나, 급부수준은 최종급여가 아니라 각출금 수준, 적립금의 투자수익, 퇴직시펀드와 연금의 교환비율 (annuity rate) 등에 의해서 결정됨.

□ 일본

- 일본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 유형으로 나뉨.
- 퇴직연금세제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관련 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급부에는 노령급부금, 탈퇴일시금, 장애 및 유족급부금 등이 있음.
 -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퇴직소득금액의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공제한 잔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임.
 -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년수가 20년 이하인 경우에는 “40만엔×근속년수” 공식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80만엔 이하이면 80만

엔으로 처리됨.

- 근속년수가 20년이 넘는 경우에는 “800만엔+70만엔×(근속년수-20년) “공식으로 계산됨.
 - 퇴직연금은 雑所得으로 처리하는데, 잡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적연금 등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퇴직연금세제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관련 체계는 다음과 같음.
- 급부에는 노령급부금, 탈퇴일시금, 장애 및 유족급부금 등이 있음.
 - 일시금과 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과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함.
 - 사망일시금에는 상속세가 부과됨.
 - 탈퇴일시금에는 소득세와 개인주민세가 과세됨.

□ 시사점

- 우리나라와 조사대상 3개국의 퇴직급여 관련 세제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본과 우리나라는 세제체계가 거의 유사하나,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분류하고 개인연금을 별도로 취급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형태의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통일하여 분류함.
 - 미국은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세액계산방법에 차이가 없지만, 1936년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10년 평균법과 자본차익 우대제도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시켜주고 있음.
 - 영국은 일시금(비과세 허용, 한도액 있음)과 연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함.
 - 미국과 영국은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을 동일한 성격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른 성격으로 간주함.

— 3개국 세제체계 조사결과가 우리나라 세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퇴직금 세제의 과도한 지원을 줄인 후, 영국 세제 체계를 과도기적으로 운영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연금세제 혜택을 일시금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것이 필요함.
- 퇴직급여는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구분되었음에도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을 구분하여 차별과세하고 있는 것은 재고해야 함.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상의 퇴직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가교연금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와 배치되므로 최소지급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
-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공적연금과 달리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처리되고 있음. 동일한 논리로 퇴직연금소득 역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함.
- 중도인출조항(확정기여형 허용, 확정급여형 불허)에 대한 과세조항도 미국 등의 사례에 비추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항목임.

4.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결과

□ 기본가정

— Simulation에 사용한 경제변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음.

- 이자율은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사용한 기금투자수익률, 임금인상률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5.5%)을 사용함.

- 임금은 계산의 편의상 근속연수 증가로 인한 승진 또는 승급에 따른 임금상승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
- 퇴직소득세액을 구하기 위한 임금액은 다음의 두 가지 소득액을 사용하였음.
- 임금액은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금세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03년 『도시가계조사』의 분위별 가구주 근로소득을 사용함.
 - 연령별 임금액은 가입연령, 기업규모, 재직기간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노동부 2002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의 산업별 통계의 산업별 대분류 중 종업원 수 30~99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전산업)와 종업원수 500인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전산업)의 연령별 임금을 사용하였음.
- 연금소득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에 대해 다음의 가정이 필요하였음.
- 퇴직연금 수급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2명, 특별공제는 표준공제만을 반영하였음.
 - 연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반영되는 다른 유형의 소득은 없음.

□ Simulation 결과

- 소득계층별 Simulation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금의 유형과 무관하게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와 퇴직소득세액 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았음.
 - 다만, 연금기간이 길수록 격차가 점차 줄어들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급부기간을 장기간으로 가져갈 유인이 일부 있음.

- 특히, 20년 유기연금을 선택할 경우 9분위 이하 소득계층에서는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액이 훨씬 크게 되어, 현행 세제에서는 이들 계층이 연금으로 전환될 유인을 가짐을 발견하였음.
- 가입연령·기업규모·재직기간별 Simulation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소득계층별 소득세 산출과 달리 중간정산을 가정하지 않고 2004년 현재부터 정년까지 해당연령의 근로자가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였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한 것임.
 -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액보다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크게 추정됨.
 - 추정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일수록 그리고 대기업일수록 현행 소득세제 하에서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음을 보여줌.
- 이상과 같은 소득계층별 분석과 가입연령·기업규모·재직기간별 분석을 종합하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긴 대기업의 젊은 취업자들은 퇴직연금을 선호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행 세제 하에서는 현재 최고소득계층이 아닌 장년층 중에서 중규모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개인퇴직계좌(IRA) 역시 전반적으로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액 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시금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됨.

5.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개정방안

□ 기본방향

- 퇴직연금 관련 세제체계의 기본방향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용 Simulation과 동일한 사례로써 도출하였음.
 - 27세에 월평균임금 1,643,178원으로 대기업에 입사한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임금인상률 5.5%와 투자수익률 6%)에 가입하여 정년인 55세부터 지급되는 퇴직연금 (예정이율 5.5%, 유지비 0.5%의 기말급 확정연금)을 수령.

- 사례분석결과와 Simulation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세제체계 하에서는 근속년수가 길수록 연금소득세제가 퇴직소득세제에 비하여 불리하나, 연금수령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연금소득 적용한계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
 - 추정결과, 10년 (15년, 20년) 근속자일 경우 연금수령기간을 8년 (14년, 22년) 이상으로 하면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를 퇴직소득세액보다 낮출 수 있음.
 - 25년 이상 근속자는 연금수령기간을 35년 이상으로 하여도 퇴직소득세액 보다 더 많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연금소득세제가 세제 측면에서 퇴직일시금보다 불리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 연금수령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첫째, 노후보장용 연금소득이 상속재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둘째 수령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국민연금 수령기간과 중복되어 소득세액이 오히

려 증가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음.

- 이 점에서 퇴직연금제도는 입법 예고된 법안 취지에 비추어, 5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가교연금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적절한 세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세부 방안

-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
 - 근속년수가 24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소득세액이 연금소득세액보다 많아져 퇴직연금이 퇴직일시금보다 세액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가교연금으로 기능할 수 있었음.
 -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완연금으로 보면, 퇴직급여비례공제를 현재의 절반수준인 20~30% 정도로 축소하여도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퇴직일시금에 비하여 세제측면에서 유리하였음.
- 둘째, 연금의 연간 수급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정, 소득세법상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시켜 과세함.
 - 퇴직금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결(1973. 10.10선고, 73다278 판결)에 근거
 - 과세대상금액이 증가하여 세액도 증액될 수 있으나, 퇴직소득성격에 충실한 적용방법일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공제제도로 인해 현행 연금소득세

액보다는 세부담이 감소될 수 있음. 단,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가 필요함.

— 셋째,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인상.

- 연금소득공제금액을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6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계산함.
- 추정결과, 연금수급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근속년수가 16년 미만인 근로자이면 연금소득세액이 퇴직소득세액보다 낮아짐.
- 16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이면 반대로 나타나서 가교연금 기능이 미흡하였음.
-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완연금으로 보아 수령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액 보다 낮으나, 연금수급액이 낮아졌음.

— 넷째, 연금소득의 50%를 공제해 주는 연금소득비례공제를 신설.

-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일시금의 소득세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져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유인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특별공제를 비롯한 각종 추가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현행 퇴직금에 비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게 되어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다섯째, 퇴직연금수령자들의 지출 중 의료비, 주거비 등에 대한 공제를 상향조정 또는 신설하는 방안이 있음.

- 현행 의료비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주거비 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 여섯째, 연금소득을 퇴직금과 같이 종합과세에서 배제하는 방안.

- 이 방안은 외국의 세제체계 중 비과세 일시금과 과세대상 연금의 혼합 체계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영국제도와 유사함.
 - 추정결과,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체계를 일원화하였기 때문에 연금수급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음.
 -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변하지 않는 구간 내에서는, 퇴직 일시금과 퇴직연금에 거의 유사한 소득세가 부과됨.
- 일곱째, 퇴직관련소득 일원화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적립금액 중 비과세부분에 한해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 이 방법 역시 퇴직일시금보다는 전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함.
 - 기타 방법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중도 대출을 허용하되, 이 금액을 비과세로 하고 미상환금액을 추후 연금수령액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연금소득세액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있음.

□ 향후 과제

- 퇴직연금이외에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까지도 반영한 연구, 법인 세법상 기업들의 지출한 퇴직연금 각출금에 대한 분석, 종업원 각출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세제혜택문제 등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와 기존연구와의 차이	4
3. 연구방법 및 구성	8
II. 퇴직금 및 퇴직연금 관련 현행 세제체계	10
1. 퇴직금 세제 체계	10
2. 퇴직연금 관련 세제 체계	13
III.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및 시사점	17
1. 미국	17
2. 영국	40
3. 일본	52
4. 시사점	61
IV.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66
1. 기본가정	66
2. 퇴직일시금의 산출	69
3. 퇴직연금의 산출	74
4.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의 비교	80
V.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개정방안	94
1. 기본방향	94
2. 세부방안	99
VI. 결론	113
참고문헌	116

표 목 차

<표 II-1>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12
<표 II-2>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12
<표 II-3> 연금소득 공제액	14
<표 III-1> 신고유형·조정총소득별 공제한도액	27
<표 III-2> 소득공제 허용 상한소득	31
<표 III-3> 유형별 각출한도액	32
<표 III-4> 연도별 선택적 각출한도액	33
<표 III-4> 단일생명표(Uniform Lifetime Table)	38
<표 III-5> 소득공제 허용 상한소득	43
<표 III-6> 공적연금 등의 공제액	57
<표 III-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급부종류	58
<표 III-8>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연금의 세제체계 비교	60
<표 III-9> 국가별 퇴직급여 급부단계별 세제 비교	62
<표 IV-1> 경제변수 추정치	66
<표 IV-2> 도시근로자 가구당 근로소득(2003년)	68
<표 IV-3> 기업규모별·연령별 임금구조 통계(전산업)	69
<표 IV-4> 소득계층별 퇴직일시금	70
<표 IV-5> 연령별 임금인상률 가정	71
<표 IV-6> 기업규모별·연령별 퇴직일시금	72
<표 IV-7> 기업규모별·연령별 IRA 퇴직일시금	73
<표 IV-8> 연금지급 기간에 따른 투자수익률	74
<표 IV-9> 연금의 일시납 보험료	75
<표 IV-10>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1)	76
<표 IV-11> 확정기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1)	77
<표 IV-12>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2)	78
<표 IV-13> 확정기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2)	79
<표 IV-14> 개인퇴직계좌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	80

<표 IV-15> 기말급 연금 현재가치	81
<표 IV-16>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1)	82
<표 IV-1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소득세 현재가치(5년 확정연금)	83
<표 IV-1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1)	84
<표 IV-19> 확정기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1)	85
<표 IV-2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1)	86
<표 IV-21>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2)	88
<표 IV-2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2)	89
<표 IV-23> 확정기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2)	90
<표 IV-2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2)	91
<표 IV-25> 개인퇴직계좌(IRA)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	92
<표 IV-26> 개인퇴직계좌(IRA) 연금소득세 현재가치	93
<표 V-1> 소득계층별 한계세율비교(확정급여형)	100
<표 V-2> 소득계층별 한계세율비교(확정기여형)	100
<표 V-3> 연령별 한계세율비교(확정급여형)	101
<표 V-4> 연령별 한계세율비교(확정기여형)	101
<표 V-5> 개인퇴직계좌(IRA) 한계세율비교	101
<표 V-6> 근로소득 공제금액 (2004년 귀속기준)	105
<표 V-7> 퇴직관련 소득세제의 일원화 사례(근속연수 20년)	109
<표 V-8> 비과세퇴직일시금 지급	111
<표 V-9> 비과세일시금 비율별 소득세 비교	112

그림 목 차

<그림 II-1> 퇴직소득세 과세절차	11
<그림 II-2> 연금소득세 과세절차	15
<그림 II-3>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과세흐름	15
<그림 V-1> 근속년수별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비교	96
<그림 V-2> 연금수령기간별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비교	98
<그림 V-3> 퇴직급여비례공제 축소	102
<그림 V-4> 연금소득공제 확대	106
<그림 V-5> 연금소득비례공제 신설	107
<그림 V-6> 퇴직관련 소득세제 일원화	110